

1. 개정이유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견조회 중에 있으나, 제출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3)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두리아노(이지숙) ② (주)장민이엔씨(한영필)
③ (주)신우기술(신정열)

나. 전화번호 : ① 02-839-0030 ② 02-403-3824 ③ 070-4600-7103

2. 명칭 : 음파/음압을 이용한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상수도관의 누수여부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서보로 전송함으로써 누수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범위>

피에조센서(압력변화에 따른 음파감지)를 기반으로 한 음파를 이용하여 도관의 누수정보와 시간 동기화를 위한 FM 신호 정보를 수집하여 3G망을 이용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해주는 누수센서 유닛 및 로거부와 중앙관제실에서 누수센서 로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시간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2지점간의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로 구성된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